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 가족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건강가정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29호, '25. 4. 22. 공포, '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2항 중 “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”를 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)”을 “(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조직·운영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35조제1항에”을 “필요한 팀을, 가족센터에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”로, “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”을 “필요한 팀을, 가족센터에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”로, “필요한 팀을”을 “필요한 팀을, 가족센터에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”을 “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센터장”으로, 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”를 “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건강가정지원센터”를 “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가족센터에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다문화가족지

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또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5조제5항에”을 “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(영 제3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3(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<u>건강가정지원센터</u> (이하 “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”이라 한다)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. ③ ~ ⑥ (생략)	제2조의3(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<u>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</u>) ① <u>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</u>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<u>필요한 팀을 둔다</u> .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·	제3조(<u>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조직·운영 등</u>) ① <u>법 제35조 및 제35조의2</u> ----- ----- <u>건강가정지원센터에</u> ----- ----- ---- <u>필요한 팀을, 가족센터에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</u> ----.
	② -----

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,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4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·② (생략)

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

----- 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센터장-----

----- 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의 조직·인사·복무·보수·회계·물품·문서-----
-----.

③ -----
----- 건강가정지원센터·가족센터-----
-----.

④ 가족센터에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제2항 및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또는 「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4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가정지원센터(<u>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</u>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	<u>-----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및 법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(영 제3조제5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82